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인천공항 면세점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2025. 04.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Korea SMEs & Startups Distribution & Marketing Agency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대진정보통신㈜</td><td>평가기간</td><td>2024.11.13.
~
2025.01.09.</td><td>평가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7">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인천공항 면세점 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기 운영</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운영을 위하여 기운영 중인 면세운영시스템(ERP)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3">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td><td rowspan="2">추진 예산</td><td rowspan="2">-</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3">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td><td>추진 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5">해당 없음</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인천공항 면세점 오프라인 물품 판매 관리
• 물품 구매자의 인적 사항 및 전산 관리</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해당 없음</td></tr>
<tr><td rowspan="2">개인정보 파일 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 colspan="2">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면세점 영업관리</td><td>740,852</td><td colspan="2">[필수항목]
성명, 여권번호, 국적, 카드번호, 계좌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없음</td><td>관세청</td><td>면세점 물품 구매자의 인적 사항 및 구매내역 관리</td></tr>
<tr><td>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td><td colspan="6">• 개인정보 수집 단계
- 대상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면세점 물품 구매자의 인적 사항 및 구매내역 관리를 위해 관세법 위임고시「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에 근거하여 수집함
• 개인정보 보유・이용, 제공, 위탁 단계
- 인천공항 면세점을 통해 물품 구매시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상시스템 DB에 보관되며,</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td><td>보유기간은 관련 법령기준(관세법 위임고시) 및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함
- 법령에 따른 소관업무(구매자관리대장) 수행을 위해 제3자(관세청)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위탁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사를 대상으로 교육 시행과 보안서약서 징구 등 수탁사 관리•감독을 시행함
• 개인정보 파기 단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관세법 위임고시「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에 따라 5년간 보관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일(2021.09)로부터 보유기간(5년)이 도래하지 않아 파기 사례가 없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별도의 종이문서를 사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총괄 흐름도 :

</td></tr>
<tr><td rowspan="2">영향평가 기준</td><td>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td>•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 영역의 7개 평가분야(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RFID, 생체인식정보, 위치정보, 가명정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31개 평가항목은 대상시스템에 활용하지 않으므로 제외함</td></tr>
<tr><td>주요 평가기준</td><td>• 대상시스템은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장 및 시스템 DB 등에 대한 실사, 인터뷰 내용과 시행 결과(산출물)의 정합성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함
• 또한, 개정된 법규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3-6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4-7호),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4.4)를 기준으로 함</td></tr>
<tr><td colspan="2">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td><td>• 영향평가 결과 "이행(양호)"로 평가된 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분석・평가</td><td>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를 기관 외부에 위탁.제공하는 경우 안전조치 등을 적정하게 이행 중임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단말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제한 및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대응을 위한 안전조치 및 악성프로그램을 점검,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영향평가 결과 "부분이행(미흡)" 또는 "미이행(취약)"으로 평가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대상시스템의 비정상 접근 방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암호 키 관리 방안, 접속기록의 위변조 및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접속기록 관리 등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함</td></tr>
<tr><td rowspan="2">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td><td>• 영향평가 결과 "부분이행(미흡)" 또는 "미이행(취약)"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안
1. 개인정보파일의 관리(1.1.2, 2.2.2)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사실 공개(3.4.1)
3. 개인정보 처리화면 개선(3.1.2)
4. 비정상 접근 방지(4.1.6, 4.1.7)
5. 접근권한 관리 절차 시행(4.1.8)
6. 접근권한 기록 항목 개선(4.1.9)
7.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4.3.2)
8. 암호키 관리(4.3.3)
9.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4.4.2, 4.4.3)
10.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안(4.8.2)</td></tr>
<tr><td>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td><td>1. 개인정보파일의 관리(2.2.2)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사실 공개(3.4.1)</td></tr>
<tr><td colspan="2">평가결과</td><td>• 「인천공항 면세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침해 위험성을 아래 평가영역별로 분석・평가함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10개 평가항목)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6개 평가항목)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25개 평가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36개 평가항목)
• 총 77개 평가항목 중 "이행(양호)" 42개, "부분이행(미흡)" 9개, "미이행(미흡)" 4개, "해당 없음(관련 없음)" 22개로 평가되어 전체 이행률은 84.5%임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계획,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이 적정하게 이행 중이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업무가 미흡함(1.1.2).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작성 등은 적정하게 이행 중이나, 개인정보파일 등록이 미흡함(2.2.2).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영역은 개인정보 제공, 제공 시 안전성 확보, 위탁계약 및 수탁사 관리·감독 등은 적정하게 이행 중이나, 개인정보 최소범위 수집, 위탁사실 공개</td></tr>
</table>

	등이 미흡함(3.1.2, 3.4.1).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은 접근통제,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및 백신 설치.운영 등이 적정하게 이행 중이나 인증 관리, 접근권한 관리, 저장시 암호화, 접속기록점검 등이 미흡함(4.1.6, 4.1,7, 4.1.8, 4.1.9, 4.3.2, 4.3.3, 4.4.2, 4.4.3, 4.8.2). •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대상시스템에서 활용하지 않으므로 평가 제외함. • 따라서, 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침해요인 13개의 항목에 대한 10건의 개선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수행시기와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관리가 필요함.